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994

발의연월일: 2021. 10. 27.

발 의 자: 김성주·강병원·박상혁

이용빈 · 임호선 · 전용기

정춘숙 · 최연숙 · 최혜영

허종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2위임. 비수도권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지역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 시대에 심뇌질환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심뇌혈관질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통해 지역간 건강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심뇌혈관질환 정의에 외과 질환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보건복지부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를 정책수립 중요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심뇌혈관질환 조사통계사업을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타 기관에서 보유 중인 데이터에 대한 자료 제공 협조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 수집·연계를 근거 기 반의 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 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

법률 제 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심장질환"을 "심혈관질환"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허혈성 심장질환"을 "심혈관질환"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심뇌혈관질환센터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말한다.

제13조를 제20조로 하고, 제9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종합계획의 수립 등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심뇌혈혈관질환의 예방·진료·재활 및 연구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뇌혈관질환의 세부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심뇌혈관질환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1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1. 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평가지원
 - 2. 제4조 종합계획 관련 업무지원
 - 3.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 4. 권역 및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심뇌혈관질환등록통계사업 관 련 자료수집·분석 및 제공
- 5.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6. 권역 또는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종전의 제5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심뇌혈관질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
- 3. 심뇌혈관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을 위한 중개ㆍ임상 연구
- 4. 심뇌혈관질환 조사·통계 연구기반 조성 및 연구데이터의 연계· 분석·제공

제13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을 "(권역 및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심뇌혈관질환센터로"를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진료 및 재활"을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및 조기재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심뇌혈관질환"을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심뇌혈관질환"을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을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을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보건복지부렁으로"를 "보건복지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정기준, 운영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3년마다 권역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종전의 제9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권역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제11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권역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1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방법·절차"를 "권역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방법·절차"를 "권역 또는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 청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하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 2.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 3. 제10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 4. 제11조에 따른 역학조사
- 5.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에 관한 업무
- 6. 제14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7.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은 자료 제공 요청 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9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2호) 중 "제13조제2항"을 "제20조"로 한다.

- 2.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드는 비용
- 3.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드는 비용
- 4.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드는 비용

제18조(종전의 제12조) 중 "제9조제3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19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제2조(정의) |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1. "심뇌혈관질환"이란 <u>심장질</u> | 1 <u>심혈관질</u> |
| <u>환</u> ,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 환 |
|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 |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 |
| 말한다. | |
| 가. 심근경색 등 <u>허혈성 심장</u> | 가 <u>심혈관</u> |
| <u> 질환</u> | <u> 질환</u> |
| 나. ~ 바. (생 략) | 나. ~ 바. (현행과 같음) |
|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 | <u><삭 제></u> |
| 로 정하는 질환 |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3. 심뇌혈관질환센터란 「의료 |
| |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 |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
| |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 |
| |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심뇌 |
| | 혈관질환센터를 말한다. |
| <u><신 설></u> | 제5조(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
| | 종합계획의 수립 등 심뇌혈관질 |
| | 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 |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 |
| | 속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 |

<신 설>

<u>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u> 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 촉한다.
- 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심뇌혈혈관질환의 예방·진 료·재활 및 연구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 뇌혈관질환의 세부 분야별로 전 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 다.
-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 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대7소(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 설>

- 제5조(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① 제8조(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 ② ------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포함한다.
 - 1.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2. ~ 4. (생 략)

③ (생략)

제6조 ~ 제8조 (생 략)

<u><신</u>설>

- 1. 심뇌혈관질환관리체계 및 제 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 치는 사항
-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2. 심뇌혈관질환 중장기 연구개 발 계획 수립
- 3. 심뇌혈관질환 예방ㆍ치료ㆍ 재활을 위한 중개 · 임상 연구
- 4. 심뇌혈관질환 조사·통계 연 구기반 조성 및 연구데이터의 연계 • 분석 • 제공
- 5. ~ 7. (현행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와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 제9조 ~ 제11조 (현행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 제1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

-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있다.
- 1. 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

 터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평가지원
- 2. 제4조 종합계획 관련 업무지원
- 3.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 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 연구
- 4. 권역 및 지역 심뇌혈관질환 센터의 심뇌혈관질환등록통계 사업 관련 자료수집·분석 및 제공
- 5.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6. 권역 또는 지역 심뇌혈관질 환센터 사업 인력에 대한 교 육·훈련
-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의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 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 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심뇌 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 다.
 - 및 재활
 - 2.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관련 업무 지원
 - 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ㆍ 연구
 - 관련 자료의 수집 · 분석 및 제공
 - 에 관한 홍보 및 교육
 - 6.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5.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령으로 정한다. 제9조(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제13조(권역 및 지역 심뇌혈관질 환센터의 지정 등) ① ----------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심뇌혈관 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 센터를 -----. 1.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진료 | 1.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삭 제> 3.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 2.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 질환 -----4.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 3.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 질환조사통계사업 -----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 4.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 ----- 보건복지부 장관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서 지정기준, 운영실적 등에 대

<u><신 설></u>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 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 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 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 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u>심뇌혈관</u> <u>질환센터</u>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u>제2항</u>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u>제4항</u>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 달한 경우
- 3. <u>제11조</u>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4. (생략)
- ④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 준·방법·절차 및 지정 취소의

| 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
|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3년 |
| 마다 권역 또는 지역심뇌혈관질 |
| 환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
| <u>④</u> <u>권역 또는</u> |
|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
| 제17조 |
| |
| |
| |
| ⑤ 권역 또는 |
|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
| |
| <u>.</u> |
| 1 |
| 제4항 |
| |
| |
| 2. 제6항 |
| |
| 3. 제17조 |
| |
| 4. (현행과 같음) |
| |
| ⑥ 권역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 |
| 센터의 지정・재지정의 기준・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방법 • 절차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 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예 방・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이 하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개 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

<신 설>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 ·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심뇌혈 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 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 • 단체에 대하 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

 1. 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

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

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2.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조사통계사업

- 3. 제10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 4. 제11조에 따른 역학조사
- 5.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에 관한 업무
- 6. 제14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7.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과 관 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

| 제] | <u>[()조</u> (ㅂ |]용의 | 지원 |]) 국 | ¦가와 | · 기방 |
|----|----------------|-----|----|------|------|------|
| 7 | 자치단 | 체는 | 다음 | 각 | 호의 | 어느 |
| Č | 하나에 | 해당 | 하는 | 비용 | S을 0 | 계산의 |
| 1 | 범위에 | 서 지 | 원할 | 수 | 있다 | • |

1.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9조제 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신 설>

<신 설>

<u><신 설></u>

2. <u>제13조제2항</u>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가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 <u>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u> |
|--|
| 수·구청장은 자료 제공 요청 |
| 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 |
| 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
|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u>에16조</u> (비용의 지원) |
| |
| <u>비용의 전부 또</u> |
| 는 일부를 |
| 1 <u>제12조제1</u> |
| 항 및 제13조제1항 |
| |
| |
| |
| |
| |
| |
| |
| 는 비용 |
| <u>는 비용</u> 3.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
| <u>는 비용</u> 3.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u>드는 비용</u> |
| 는 비용 3.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드는 비용 4.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
| 는 비용 3.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드는 비용 4.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드는 비용 |
| 는 비용 3.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드는 비용 4.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드는 비용 |

제11조 (생 략)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 다.

<신 설>

제13조 (생략) <신 설>

제17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청문)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 제13조제5항-----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 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21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